

어린이 생활·놀이공간의 유해물질들 제대로 알기

김미경 교수(경인여자대학교 보건환경과)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통해 세 가지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적합 판정으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의 11개 항목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활동공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명의 환경부에서 인증 받는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아토피나 피부질환에 민감할 경우 부모님들은 실외 미세 공기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하는 실내공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인지 알아보려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확인하면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는 환경부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을 중금속, 실내공기질, 석면 등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해 친환경자재나 유해물질이 없는 자재로 건축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활동공간으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황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다면 부모는 불안함이 많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부모의 근심을 덜고자 어린이활동공간 안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실내공기질은 적절한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도 확인하고, 최근 3년 내 환경 관련 행정처분 여부도 정확하게 조사한다. 서류 검토와 현장에 직접 검사 장비를 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 장관의 친환경인증서와 현판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이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4년을 기점으로 재인증하여 유지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기관운영과 기관장에게도 지도와 교육이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2015년 이전 건축된 시설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아이들의 쾌적한 공간과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심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인증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며, 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안전 진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석면조사 결과 등을 바탕

으로 인증하게 된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유치원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만 해당된다. 인증은 환경부장관 명의로 진행되며, 인증에 따른 유효기간은 시설 개보수 최소 주기인 3년이다. 인증시설은 3년에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재점검하며, 인증기준 준수시 인증서는 유효하게 된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시설 소유자는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인증패·스티커·간판·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측정대행기관에 의뢰해 자가측정을 하는 측정주기가 연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된다.